

안 건 번 호	제 1 호
접 수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협
의
안
건

기술자격수당 시행(案)

제1차 노사협의회

제 출 자	의장 주성환
제 출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기술자격수당 시행(案)

1. 협의주문

- 근로자의 기술·자격수당 등을 시행하고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 변상 등의 지급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

2. 제안이유

-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시행
- 서울시 및 산하 타 공공기관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나, 우리 재단은 시행하지 않아 도입 필요

3. 주요골자

- 공공기관 수준에 맞는 기술·자격수당 지급 규정화 및 시행

4. 관련규정

-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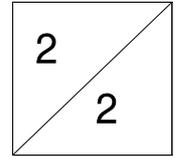
국가기술자격법

제14조(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.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

제27조(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)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·승진·전보·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.



안 건 번 호	제 2 호
접 수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협
의
안
건

고충처리절차 개선(案)

제1차 노사협의회

제 출 자	의장 주성환
제 출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고충처리절차 개선(案)

1. 협의주문

- 근로자의 고충처리 민원 발생시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 및 고충처리위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도화

2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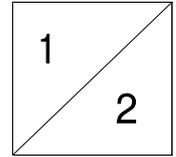
- 서울시 및 산하 타 공공기관의 고충처리절차는 구체적이어서 고충처리위원의 업무 처리의 적정성, 공정성, 투명성 등 확보 가능
- 우리 재단의 고충처리 관련규정 및 절차는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어 민원 발생시 처리 근거 빈약

3. 주요골자

- 고충처리위원의 권한 명시 및 제도화
- 고충처리위원의 업무 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

4. 관련규정

- 서울디지털재단 노사협의회 운영내규 제5장 고충처리



안 건 번 호	제 1 호
접 수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의
결
안
건

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(案)

제1차 노사협의회

제 출 자	의장 주성환
제 출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(案)

1. 의결주문

- 근로자 사생활 보장의 후속조치로 사적 SNS 사용을 지양하고, 재단의 공식 SNS를 지정하여 사용

2. 제안이유

- 카카오톡 등 사적 SNS를 공적인 목적으로 함께 사용함에 따라 사생활 보장의 취지가 퇴색되는 상황 발생
- 근무시간 외 SNS 사용금지 및 업무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업무용 공식 SNS 사용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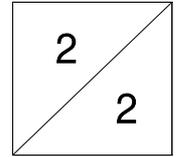
3. 주요골자

- 재단의 업무용 공식 SNS로 “잔디(JANDI)” 제안
 - (1단계)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전달 최소화
 - (2단계) 업무용 대안 SNS로 전환
 - (3단계) 업무용 SNS를 재단 고유기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
- ※ 상기 위원은 노사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 및 사용자측 추천을 받음

4. 관련규정

- 재단 복무규정

제17조(사생활 보장) 이사장은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
안 건 번 호	제 2 호
접 수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의
결
안
건

'18년 교육훈련 세부 계획(안)

제1차 노사협의회

제 출 자	의장 이치형
제 출 년 월 일	2018년 3월 30일

'18년 교육훈련 세부 계획(案)

1. 의결주문

- 노사협의회 운영내규 제20조에 의거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근로자의 능력개발 활동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 도출을 목적으로 재단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코자 함

3. 주요 골자

구분		과정명	수행주체	비고
공통역량	법정교육	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 등	자체/위탁	연중
		기타(소방, 전기 등 해당 분야별)	개별	
	기반교육	신입직원 교육(OJT)	자체	4월
		오피스, 글로벌 역량 강화 과정	위탁	연중
공동연수	임직원 워크숍			
리더십 및 경영관리	경영관리자 교육	리더십 역량 향상과정	자체/위탁	연중
	경영관리 교육	조달교육, 회계교육, 감사교육, 市 주관 설명회 등		
직무역량	직무일반	기초직무과정, 직무향상과정 등	위탁	연중
	직무전문 심화	학위 취득과정 지원	위탁	연중
		전문자격증 취득과정	위탁	
	국내 장기 연수	자체/위탁		
기타	저성과자 역량강화	대상자 발생시 별도 프로그램 운영	위탁	연중
	청렴도 향상 교육	기관장 공직기강, 청렴교육	자체/위탁	연중
	퇴직연금 가입자 교육	퇴직연금 가입자 보수 교육	위탁	1회
	협치 강화	함께 서울 공감마당	위탁	2~11월
	온라인 교육	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	위탁	연중

4. 관련규정

- 노사협의회 운영내규 제20조 1항 1호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

제20조(의결사항)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
 2.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 3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
 4.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
 5.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- ② 본 규정을 제·개정할 경우 제15조에 따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